

전문위원회규정

제 1 조 (설치, 목적) 본협회 정관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전문위원회를 두
고 분야별 업무를 조사연구 개발하여 본협회 발전에 기여한다.

제 2 조 (조직) 1.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- (1) 기획행정위원회
- (2) 분류위원회
- (3) 목록위원회
- (4) 서지참고위원회
- (5) 전산화위원회
- (6) 국내외협력위원회
- (7) 기타 필요한 위원회

2.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을 둔다.

제 3 조 (임시위원회) 1. 각 위원회는 특정 전문분야에 구체적인 사업추진의 필요
성이 있을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.

2. 임시위원회는 해당 특정사업 추진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체된다.

3. 임시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명을 둔다.

제 4 조 (위촉)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
2.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5 조 (임무) 각 위원회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.

2. 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연구조사 협의한다.

제 6 조 (임기) 1.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.

2. 위원장 및 위원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본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임하
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7 조 (회의)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2.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의 결정은
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결석위원은 출석위원에게 권한
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8 조 (사업) 각 위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
1. 기획행정위원회

- (1) 도서관 행정과 경영에 관한 일

- (2) 사업계획에 관한 일
 - (3) 기타 필요한 일
 - 2. 분류위원회
 - (1) 한국십진분류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일
 - (2) 기타 필요한 일
 - 3. 목록위원회
 - (1) 한국목록규칙의 연구 개발에 관한 일
 - (2) 기타 필요한 일
 - 4. 서지참고위원회
 - (1) 서지연구 및 편찬에 관한 일
 - (2) 참고업무의 연구에 관한 일
 - (3) 기타 필요한 일
 - 5. 전산화위원회
 - (1) 도서관 전산화의 연구개발에 관한 일
 - (2) 기타 필요한 일
 - 6. 국내외 협력위원회
 - (1) 자국 도서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교류에 관한 일
 - (2) 국내도서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일
 - (3) 기타 필요한 일
- 제 9 조 (개정) 위원회의 재정은 본협회 사업비로서 충당한다.**

부 칙

- ①(시행) 본 규정은 196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개정) 본 규정은 1972년 2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.
- ③(개정) 본 규정은 1974년 9월 23일부터 개정시행한다.
- ④(개정) 본 규정은 1983년 4월 6일부터 개정시행한다.